

#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59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4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, 행정규칙 폐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3조)
- 나. 간사 직위 변경(안 제6조제2항)
- 다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 : 생략(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)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  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 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   - 가) 중앙부처 : 해당 없음
    - 나) 경기도 : 해당 없음

##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” 를 “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 을 “업무담당 실·국장” 으로, “「김포시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 당연직 위원” 을 “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·국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실·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” 을 “실·국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팀장” 을 “부서장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정책기획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정책기획과장 이금미
	팀장 직위·성명	기획팀장 이민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김혜린(☎2088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<u>부의하는</u> 사항의 결정</p>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</u> 하며,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<u>기획조정실장</u>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<u>「김포시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</u> 당연직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<u>실·국장</u> 및 <u>기획업무담당 부서장</u>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, 학계종사자, 전문가 등 내·외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부치는</u> -----</p>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당연직 위원</u> <u>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업무담당 실·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·국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실·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 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  
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 
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 략)

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  
며,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 
담당자로 한다.

③ (생 략)

-----.

<단서 삭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부서장-----

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**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정의 운영계획,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·의결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4. 3. 27.>

1. 시정의 운영계획 및 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
2. 둘 이상의 실·국·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·조정사항의 결정
3. 상급기관의 장이 수립·시달하는 중·장기계획 중 지역특화 할 사업의 결정
4.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·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의 결정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「김포시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24. 3. 27.>

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·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, 학계종사자, 전문가 등 내·외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27.>

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의결이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김포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의견의 청취)**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
**제6조(간사 및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,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한다.

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적용)** 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수당·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8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 및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